#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67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이해식·한병도·송재호

이형석 · 오기형 · 민형배

이소영 • 김민철 • 임호선

김병주 · 양기대 · 고영인

오영환 · 김영배 · 서영교

김민석 • 서영석 • 허 영

우워식 • 이성만 • 강득구

조오섭 · 김경협 의원

(239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음.

이러한 재정분권 방안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 및 제18조제1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8159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0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3호), 「지방세기본법」(의안번호 제816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6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62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7호 중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제71조제3항제3호 가목 및 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4호가목에 따라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비용 보전

# 부 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제17조의2(발전기금의 재원) ① -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법」 <u>제71조제3항제</u>	7 <u>제71</u> 조제3항제3호
<u>3호가목</u> 에 따른 금액	<u>가목 및 제4호가목</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발전	제18조(발전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u>.</u>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5.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
	4호가목에 따라 국가에서 지
	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의 비용
	<u>보전</u>
<u>5.·6.</u> (생 략)	<u>6.·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